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24
- 다. 상정일자 : 2003. 11. 24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사회복지과장 정이환
- 나. 제안사유

○ 영세민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조례중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응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「연5%」를 「연2%」로, 연체율은 「연15%」를 「연10%」로 인하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중 “영세민”을 “저소득주민”으로, “응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5%”를 “응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2%”로, “연15%”를 “연10%”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로 개정. (안제1조, 안제2조, 안제4조, 안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‘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’에서 ‘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’로 바꾸고, 응자금에 대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조정한 것입니다. 이 이자율 조정문제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중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된 부분입니다.
조례개정상의 절차상,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부 :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를 “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
안정자금융자조례”로 한다

제1조 및 제2조중 “영세민”을 “각각 ”저소득주민“으로 한다.

제4조 제3항중 “연5%”를 “연2%”로 하고 “연 15%”를 “연 10%”로
한다.

제8조중 “영세민”을 “저소득주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